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·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 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지정·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관광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20488호, 2024. 10. 22. 공포, 2025. 4. 23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전담 여행사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, 전담여행사의 지정·갱신·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전담여행사 지정 요건, 유효기간, 갱신 등 세부 내용을 규정(안 제21조의2 제정)

나. 전담여행사 지정서 서식 규정 (안 별지 제00호 서식 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전담여행사 지정 등)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여행업을 등록하였을 것
2. 재정 건전성이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정될 것.
3. 여행상품의 기획 및 집행 능력이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정될 것.
4.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
5. 최근 3년 이내에 관광진흥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서는 우리나라와 양해각서·협정 등이 체

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정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00호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.

제 호

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서

(협정체결국가 :)

1. 업체명: (협정국가 언어 표기)

2. 대표자: (협정국가 언어 표기)

3. 등록번호:

4. 지정일자: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귀사를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의2(전담여행사의 지정 등) <u><신 설></u>	제21조의2(전담여행사의 지정 등) <u>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여행업을 등록하였을 것</u> <u>2. 재정 건전성이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정될 것.</u> <u>3. 여행상품의 기획 및 집행 능력이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정될 것.</u> <u>4.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</u>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5. 최근 3년 이내에 관광진흥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</u> <u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서는 우리나라와 양해각서·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정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</u>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>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</u> <u>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00호 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	
연락처	(044) 203 - 2829